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139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일

발 의 자 : 정 병 용 의원

1. 제안이유

가. 급변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명시 (안 제4조)

라.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안 제5조)

마. 이용대상의 범위(안 제6조)

바. 운영 및 관리(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6. 진로·진학·적성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교육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